

SM 난청(難聽)의 의료법학적 문제

문국진/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결핵치료에 있어 스트렙토마이신(SM; Streptomycin)의 투여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또 실제에 있어서 결핵치료에 SM이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SM의 부작용으로 원치 않았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이것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마침내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SM의 부작용중에서도 특히 이명(耳鳴)은 혼이 있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난청(難聽)이 되기도 한다.

이런 예가 많아 법적인 판결을 받은 것도 상당 수 되기 때문에 그 판례의 경향 그리고 일상의료에서 유의하여야 할 의료법학적인 문제는 한결같이 SM투여시의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다.

따라서 SM투여시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1. 투약전 주의의무

SM을 투여하기에 앞서 투여인으로서 주의의무는 대개 두 가지로 구성된다.

즉, 최적정약제 선택의 의무와 부작용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1) 최적정약제 선택의 의무

치료를 목적하였을 때 여러가지 방법과 약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의사は 그 환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약제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최적정이란 일반적인 의미와 개별적인 의미가 포함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최적정이란 그 당시 그 사회의 의료수준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며 개별적 의미에서의 최적정이란 그 환자를 진찰하여 질병의 상태 및 진행된 정도로 보아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선택할 의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부작용 예전(豫見)의무

모든 의약품은 주작용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 특히 그 부작용이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이 알려진 경우에는 과연 그 환자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알아 볼 의무가 투여인

에게는 있게 된다.

만일 이러한 것을 예비검사로서 알 수 있는 약제라면 투여인은 반드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의학적인 수단 방법으로서는 폐니실린을 제외하고는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예비검사방법이 없다.

따라서 SM의 경우도 예비검사로써 난청 또는 쇽크(Shock) 등의 가능성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예전의무의 기준은 문진(問診)에 두게 된다.

(3) 투여전 문진(問診)의무

문진이란 환자와 의료인이 주고 받는 질문과 대답의 대화형식을 통해서 환자의 기왕력(既往力)과 과거에 이런 약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때 어떤 부작용이 출현되었던 일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SM 뿐만이 아니라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환자에게 야기된 경우 그 과실의 유무를 법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문진에 둔다. 즉 약물투여시 부작용으로 인한 투여인의 과실판단에 있어서 적절한 문진을 하였는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문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다.

그 이유는 문진이라는 진단방법은 과거에 있어서 각종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취하던 방법이며 오늘날과 같이 임상병리검사, X선검사, 내시경, 생검(生檢), CT촬영 등과 같이 그 병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진

단방법이 많이 개발된 현시점에 있어서는 문진이 진단에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차원에서 환자의 피해를 평가하는데 즉 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는데 어느정도 정신을 집중하고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여 주의를 하면서 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한 문진을 하였는가에 그 기준을 두게 된다.

따라서 근래에 나온 판례를 보면 문진의 적정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 문진(問診) 적정성 법적평가

(1) 본인 이외의 가족에 관한 문진

문진을 환자 본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시행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받기위해 SM을 투여 받은 청년환자가 다음날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누나도 결핵치료를 받고 난청이 되었다고 하며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하고 담당의사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혼이 있는 SM의 부작용이라 하며 계속 투여하여 청년환자도 난청이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가족에 까지도 문진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가족들의 난청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 했다.

(2) 교육정도에 맞는 문진이였는가?

문진은 그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맞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에게 “과거에 SM을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SM이 무엇인지 모르는 노인에게 이런식의 문진은 적합하지 못하여 문진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문진의 중요성을 교육시켰는가?

환자 특히 현재 고통이 있는 환자는 무엇보다 그 고통에서 헤어날 것 만을 바라며 주위에서 무엇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진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질병의 진단에 절대적인 근거가 되며 그것에 입각해서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이야-

기하여야 한다고 문진의 중요성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이라는 판례가 있다.

즉, 경련이 심한 파상풍환자에게 의사가 단순히 지난날에 몸에 상처받은 사실이 없는가를 묻자 환자는 그런것은 없으니 고통이나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했다. 의사가 단순한 경련으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에게 그 병원의 의사가 문진의 중요성을 교육시키자 과거에 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 환자가 사망하자 가족은 전 의사를 범에 고소하였다. 범원은 문진의 중요성을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생활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실천지침

1. 음식찌꺼기를 대폭 줄입니다.

가지 수와 양 위주인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계기로 삽을시다.

2. 1회용품을 쓰지맙니다.

당장은 편리해도 엄청난 자원낭비이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쓰레기를 분리수거합시다.

재생가능한 종이류, 캔, 빈병 등을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정화하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한집에서 한동의 불을 끄고 1리터의 수도물을 절약해도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올여름에 부채로 더위를 삭힌 옛선조들을 생각하며 에어콘을 켜지않고 부채와 선풍기로 여름을 이겨봅시다.